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0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개관	3
2. 총괄적 검토	6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적용범위	12
나. 참여주체의 책무	16
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19
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	29
마. 공무원 보수안 결정의 절차 및 효력 등	3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건영의원 등 2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9.

다. 회부연월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에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자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 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의 보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서, 본칙 16개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기구로 공무원위원 9명, 정부위원 9명 및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① 공무원의 봉급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률, ② 공무원 보수의 조정, ③ 공무원의 호봉, 승급,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공무원과 민간 부문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전념 및 적정한 품위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되 공

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을 법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공무원 보수안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장관등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보수안 결정의 절차 및 효력과 그 시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참여주체의 책무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	회의
	제9조	소위원회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

구분	조문 내용	
	제13조	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제14조	보수안의 시행을 위한 조치
	제15조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	운영세칙
부칙	-	시행일

2. 총괄적 검토

현행 제도상 공무원 보수가 예산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① 다음 연도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 ② 해당 조사에 기반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공무원 보수 수준 조정에 관한 권고안 심의,¹⁾ ③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통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 확정, ④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 예산안 편성, ⑤ 국회의 예산 확정과 확정된 예산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며,²⁾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봉급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³⁾ 통상 전년

1)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훈령)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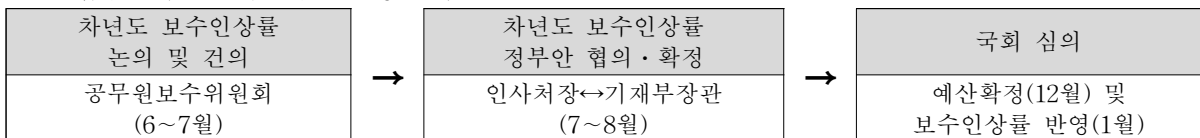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2) 현행법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 절차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1999. 1. 21.>

② 삭제 <1999. 1. 21.>

③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⑤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⑥ 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대비 인상률에 상응하는 인건비 증액분을 해당 연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

현재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다음 연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⁴⁾ 동 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합의제기구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근 10년 중 5년은 권고안대로 인건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음.⁵⁾⁶⁾

제정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추상적인 보수 결정의 원칙⁷⁾을 보완하여 생계를 위한 생활비 수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⑧ 삭제 <2011. 8. 29.>

⑨ 삭제 <2020. 3. 10.>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39만9천9백원을 뺀 금액

4) 노동조합·정부 및 공익위원의 대표가 각각 5인씩 위원회를 구성함.

5)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과 예산안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권고안	4.0~4.9	3.5~4.0	3.3~4.2	고공단 3.2, 기타 5.1	2.8~3.3	1.3~1.5	1.9~2.2	1.7~2.3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보수 인상률	3.0	3.5	2.6	1.8	2.8	0.9	1.4	1.7	2.5	3.0

6) 인사혁신처는 2024년 및 2025년의 경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5급 이상 권고안과 6급 이하 권고안의 범위 내에서 보수인상률이 반영되었으며, 동 위원회의 6급 이하 하위직의 처우개선 강화 취지를 반영하여 6급 이하 중 7~9급 일부 저호봉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7)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성실한 직무 전념과 적절한 품위 유지라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민간 부문과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을
맞추도록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기구로 격상시켜 공무원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위원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
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공무원 봉급의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
의 인상률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공무원 보수안을 정부의 인건
비 예산안 및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민간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에 준하여 공무원이 당사자로서 보수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민간 부문과의
형평을 담보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공무원이 가지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되, 당사자 외에 공익을 대표하는 중립적 구성원이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공적 자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재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바,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정한 공무원 보수안이 충분한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상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약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상충 관계 등 일부 법체계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상호 중복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심의·의결 사항별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은 점, 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무원 보수안을 인건비 예산안 및 관련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인건비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의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규율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정안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의 수준은 물가 등 경제 여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인건비 예산과 연계되어 대규모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자문기구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과 사무기구를 갖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 간 기능 중복에 해당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 제도개선 등의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수행하고 있고 「공무원보수위원회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정책의 수립과 처우 개선 등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나 처우 개선 등은 경제적·재정적 여건 및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공무원 인건비 예산안 편성이나 관련 정책 수립 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자문적 권고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입법청원(청원번호 제2200104호, 이선희 외 55,213인)이 2025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적용범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의 목적에 대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법률의 제명은 법률의 고유한 이름으로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목적 규정은 법률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일반적으로 수단을 나열하고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명

시하고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하기 위하여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표현하고 있음.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본칙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목적 규정의 경우 법률의 전반전인 취지를 담고 있으나,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라는 부분은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과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그 절차를 정함”)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이라는 부분은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목적 규정의 표현 방식인 반면 문언상으로는 법 제정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일부 법문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고 있는 바, 제정안은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종을 법률 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국가공무원에 관한 적용 범위 중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의 목적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관계 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⁸⁾

이는 「국가공무원법」 외에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해당 위임사항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국가공무원 관계 법률을 열거한 것으로,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나 절차 및 효력 등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들 법률에 따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열거하여야 할 입법적 실익도 크지 않은

8)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3조는 전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동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적용 범위는 공무원의 직종 등 구분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동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나. 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2조).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 제도로써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이라는 정책 분야에서 실효성있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⁹⁾

다만, 제정안은 조문의 제목을 “참여주체의 책무”로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에 대해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예산안이 편성되는

9) 유사 입법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최종적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행정주체의 의사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 외에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어 심의와 의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보수안이 최종적인 행정주체의 의사로 확정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보수의 수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행정주체로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로 하여금 공무원의 봉급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률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특히 제정안 제13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의결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공무원 보수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 보수안이 정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이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단계에서 정부를 구속하는 반면 공무원 보수안이 반영된 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는 국회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은 행정주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기관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를 감안할 때, 행정주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법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기관에 대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가지는 법적 효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책무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가지는 구속력 등 법적 효력, 공무원 보수안이 최종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로 확정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무의 주체와 내용을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강구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제4조(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무원의 봉급[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을
2. 공무원의 보수(제1호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호봉, 승급,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

1.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무원위원”이라 한다) 9명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정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2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1명
2.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명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1명
4.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5.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6.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7.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

⑤ 공익위원은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익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정안은 1)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① 공무원 봉급의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률, ② 공무원 보수의

조정, ③ 공무원의 호봉, 승급,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 균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4조),

2)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공무원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공무원위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정부위원은 회사무처·법원행정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교육부 소속 공무원 각 1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이 포함되도록 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공익위원은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구로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소통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 있어 중요한 제인 보수 수준이나 그 밖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 제반 여건, 재정 상황과 파급 효과, 공공부문의 인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기구로 격상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심의·의결 사항별로 그에 관한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것인지 자문적 효력만을 갖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① 공무원 봉급의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률, ② 공무원 보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공무원의 호봉, 승급,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등 6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¹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조의2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¹¹⁾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훈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 사항¹²⁾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나열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①의 “공무원 봉급의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을”은 ②의 “공무원 보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사항은 제정안 제13조에 따라 공무원보수위

10)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12)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④의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는 등¹³⁾ 심의·의결 사항이 상호 중복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도출되는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그 의결에 포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그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정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공무원 보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적 기능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바, 심의·의결 사항별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기구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는 법문 표현을 사용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어떤 종류의 합의제기구라도 의결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원회 등

13) 그 밖에 ③의 “공무원의 호봉, 승급,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⑤의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도 ④의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합의제기구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은 법령 전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제정안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이를 법정계획으로 명시하여 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동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가지는 법적 효력에 관하여 판단할만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¹⁴⁾

따라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소관하는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심의·의결 사항별로 동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가지는 법적 효력 및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무원 보수안을 인건비 예산안 및 관련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인건비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의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규율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14) 현행 법제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해 보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¹⁵⁾

인사혁신처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공무원 처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보수규정」상 세부 규율 사항(호봉승급,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등)까지 포괄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으므로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 보수수준 조정, 보수 균형에 관한 사항 등 처우 개선에 관련된 내용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공무원위원 9명, 정부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정부위원에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제정안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익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15) “공무원 보수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다음연도 봉급 인상률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등 합의제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나 민간위원인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무총리의 임용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제정안은 정부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교육부 소속 공무원 각 1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이 포함되도록 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위원이 될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소속기관별 인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해당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기 보다는 각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입법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¹⁶⁾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 1명씩 정부위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를 제외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도 정부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자문기구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과 사무기구를 갖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 간 기능 중복에 해당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의결은 인건비 예산안의 편성 시 그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정 당국에 대한 예산 요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재정 당국이 이에 참여하여 논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방부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 인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국무총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주무장관등”이라 한다)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공무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3명 이하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항을 준용하며, 이 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 회의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

사·연구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연구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장관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법률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1) 회의의 소집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2)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되,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특별한 정족수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3)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그 심의·의결에 갈음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하면서 사무국에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공무원보수연구

회를 설치하여 매년 공무원 보수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5)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부 검토를 요하거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합의제기구의 정족수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의결정족수 외에 회의의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 제8조제3항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의결 시 공무원 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위원 외에 대등한 당사자로서 정부위원도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균형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⁷⁾

한편, 사무국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동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는 반면,¹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7) 유사 입법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 제17조제4항 본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8) 「최저임금법」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동법 시행령은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위원회 외의 자문위원회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면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유사 사례를 참고하되,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무국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간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 제16조는 이 법률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을 포함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 방식을 채택하

고 있는 바, 운영세칙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아 동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지침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대통령령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다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임의 대상이 되는 하위 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직접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바, 운영세칙에 관한 해당 조문은 삭제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마. 공무원 보수안 결정의 절차 및 효력 등

제12조(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절한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안(報酬案)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수안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심의·의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수안의 시행을 위한 조치) ① 주무장관등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지체 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등은 제1항의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필요한 제반(諸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경우 생활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보수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안 제12조),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무원 보수안을 작성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인건비의 예산안 반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안 제13조), 주무장관등에 대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을 지체 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14조).

제정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추상적인 보수 결정의 원칙¹⁹⁾을 일부 보완하여 생계를 위한 생활비 수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전념과 적절한 품위 유지라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과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을 맞추도록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19)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자문기관 성격의 합의제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다음 연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 중 5년은 권고안대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을 예산안 및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공무원의 근로관계에 있어 중요 의제인 보수를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제도에 기반한 상호 협의와 이해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이에 민간 부문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구속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공무원 보수의 수준을 민간 부문의 중견기업에 상응하게 책정하도록 규범력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보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담보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보수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경우 기업 등 고용주의 사적인 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 반면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공적 자금인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이는 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법제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 보수의 수준은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로 다른 보수 결정의 원칙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른 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내용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보수 결정의 원칙에 반영하는 등 법체계적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아울러, 공무원 보수안의 결정 절차 및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무원 보수안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법정화하는 경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형식적인 추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이 충분한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상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약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²⁰⁾

20) 한편, 제정안 제14조제1항은 주무장관등으로 하여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지체없이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국

유사 입법례인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에 있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와 이의 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²¹⁾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 보수안의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정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다음 연도 봉급 인상률 등 공무원 보수의 수준은 물가 등 경제 여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 공무원 보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집행되는 바, 대규모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전이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유사한 관점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21)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은 중복 입법에 해당하고, 공공 부문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보수를 특정 집단과 명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나 처우 개선 등은 경제적·재정적 여건 및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공무원 인건비 예산안 편성이나 관련 정책 수립 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자문적 권고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원 보수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